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록물공개심의회 확대〉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59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심의 대상 기록물은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 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함. 더불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3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의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심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생략)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7명의</u>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u>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 ----- <u>15명의</u> ----- ----- ----- <u>3년으로</u> ----- -----.
③ 기록물공개심의회는 <u>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후단 신설>	③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 ----- -----. -----이 경우 위원 중 10인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기록관·특수기록관¹⁾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²⁾ 등 기록물관리기관의 체계 하에서 단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 등은 법령상 기준에 따라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³⁾하여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현황 》

구 분	개 수	설치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1	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4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4	서울, 경남, 청주, 이천
대통령기록관	1	대통령기록관
합 계	10	

자료: 행정안전부

기록물은 생산·등록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정해지며, 현행법 제35조는 공공기관이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그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1)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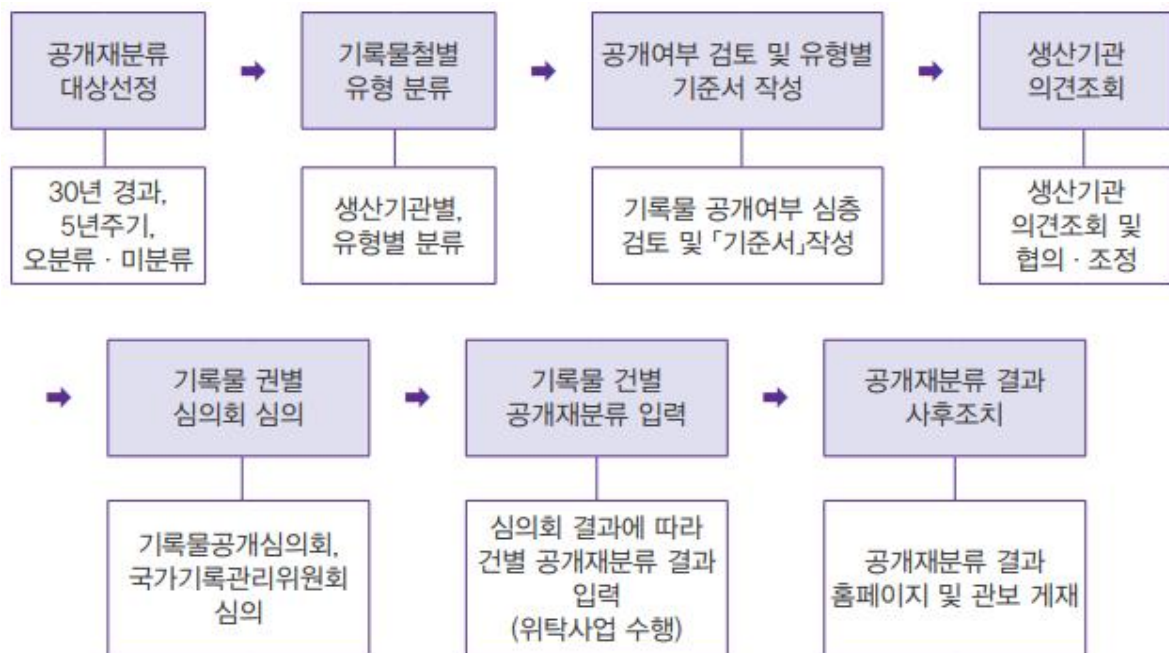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3)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음.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하며,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 공개재분류 업무 절차 》



※ 자료출처: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절차 개선 방안」,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1호, 2020년

- 4)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공공기관은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후략)
-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후략)
-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략)

또한, 현행법 제38조제1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 등 기록물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 이를 통하여 정보공개와 비공개 이익 사이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록물공개심의회 제도는 심의 대상 기록물에 비해 적은 위원 정수로 인한 전문성·업무부담 문제,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구성상의 한계, 2년 임기로 인한 전문성의 축적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정수와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의 충실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원들의 심의·업무 부담을 분산하여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15명, 그 중 민간위원을 10명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심의회 구성·운영의 탄력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다수의 심의·위원회 제도는 위원 정수를 “○인 이상 ○인 이하”와 같이 범위로 정하거나, “위원 정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규율함으로써, 기관의 규모·업무량·전문분야 등을 감안하여 하위법령 및 운영규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와 같이 범위 규정으로 두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는 비율 규정으로 두는 방안 등, 보다 탄력적·효율적인 구성 방식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원 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관할 지역 또는 소관 기관의 기록물만을 소장·재분류하여 공개 심의 대상 기록물의 유형이 비교적 단순하고 전문적 심의가 필요한 분야도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7명 이상 15명 이내’와 같이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심의회의 민간위원 수를 10명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약 6,000만원으로 추계된 바 있음.⁶⁾

6) 개정안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공개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함) 민간위원 수는 10명으로 하고, 추가되는 민간위원 수는 6명으로 가정함

문 의 처
02)6788-5338

-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심의회 민간위원 수는 4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가되는 민간위원 수는 6명
 -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